

창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6111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김능철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7. 20.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가단102416 판결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20. 11. 30. 접수 제75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와 A(D생)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한 부인 청구를 취하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과 같다).

### 2.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나. 갑 7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김해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A은 적극재산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기준 177,178,6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181,746,150원 외에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보증채무 등으로 1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기술보증기금과 소외 회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따른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2020. 11.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기술보증기금이 2021. 1. 15.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다. A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보증기금 등 파산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등 참조).

###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주장

피고는 2015. 3. 25. K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A이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K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K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되, 피고가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K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양도담보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라 A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반환받아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A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 나. 판단

1)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을 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25. 주식회사 L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L에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이 K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송금한 위 돈이 K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갑 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A에게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15. 3. 17. A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K의 피고에 대한 2015. 3. 25.자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하였다. 그 후 A은 K가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A은 2020. 7.경 피고에게 ‘A이 이 사건 보증채무의 보증인이 되었기에 K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 두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20.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처럼 A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몇 년 후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요청하여 2015. 12. 1.경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A에게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으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적이 없다. 또한 A은 파산신청(창원지방법원 2021하단99, 2021하면99)을 하면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A이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위 대여금채무와 이 사건 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피고도 A, K에게 여러 차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던 중 2020. 7.경 A으로부터 K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사건 부동산을 A 명의로 이전해 두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가 A, K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고 본인이 제출한 2021. 3. 5.자 답변서 참조).

#### **4.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민경, 판사 이장욱, 판사 이현주